

EU의 현행 인증수출자제도 주요내용(신EU 관세법 등) 안내

EU는 신EU 관세법(UCC) 발효('16.5.1)를 통해 포괄인증수출자(Single Authorization) 제도를 폐지하였으며, '16.5.1 이후에 발급된 C/O는 개정 인증수출자 제도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적용되었던 「EU의 포괄인증수출자제도 업무지침('15.3.20.시행)」은 적용불가 하며, 현행 인증수출자제도 관련 규정 및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주요 내용

1. Union Customs Code Regulation 952/2013 (UCC) 제26조

- 하나의 관세당국에 의한 관세법의 적용과 관련한 결정(인증 등)은 **EU 관세영역 전역에서 유효**

2. Guidance on Approved Exporters 3.3.4장

- 인증수출자는 다른 회원국에서 상품을 수출하려는 경우 그 물품에 대한 **특혜 원산지를 입증**해야함 (원산지 증빙자료 기록·보관 의무)
- 한 회원국에서 **인증수출자로 인증**되면 추가신청 필요 없이 **모든 회원국에서 인증이 유효**함

3.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2015/2447 제67조

- **유럽연합의 관세영역에서 설립된 수출자**는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인증수출자 인증을 신청**할 수 있음
- 인증수출자 인증은 EU가 체결한 협정의 **원산지조항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한 인(人)**에게만 부여

〈新UCC 관련 집행위 회신('20.6월)〉

- 인증수출자 인증은 EU 전역에서 유효하므로, 인증수출자는 자신의 소재국외의 EU회원국에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원산지신고서 작성 가능
- 인증수출자와 타 회원국 수출서비스 제공자는 특수관계(본사-지사 관계 등)가 아니어도 무관

4. Models of Authorization numbers issued for Approved Exporters

- 검증요청은 물품을 수출한 국가가 아닌, **인증수출자 인증서를 발행한 국가**(인증번호의 시작 국가코드 2자리로 쉽게 인식)에 송부해야 함

<UCC 개정 전후 내용 비교>

구분	UCC 개정('16.5.1) 전	UCC 개정('16.5.1) 후
포괄인증 신청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신이 설립된 국가 외의 회원국에서 물품을 수출하는 자는 포괄인증수출자 인증을 별도로 받아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 회원국에서 인증수출자로 인증되면 추가신청 필요없이 EU영역 전역에서 인증이 유효함
수출국·회사 명시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증서에 다른 회원국인 수출국 및 회사명을 반드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증서에 수출국·회사명을 별도로 기재할 필요 없음
통지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포괄인증 신청받은 관세당국은 인증 후 관련 회원국 관세당국에 통지의무 有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 회원국에서 인증되면 자동으로 EU 전역에서 인증이 유효하므로 관련 회원국에 별도로 통지할 필요 없음

II. 관련규정

- 「신EU관세법(Union Customs Code 952/2013)」제26조
- 「인증수출자 안내서(Guidance on Approved Exporters)」제3.3.4장
- 「신 EU관세법 시행규칙(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2015/2447)*」제67조
 - * 포괄인증수출자를 규정한「EU관세법 시행규칙 1207/2001」은 폐지되고 동 규정으로 대체
- Models of Authorization numbers issued for Approved Exporters

III . 첨부 파일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EU 현행 인증수출자제도 주요내용 안내

| Contact



소운혜 관세전문가
T 02-6011-3012
E yhso@esein.co.kr



안성호 관세전문가
T 070-4353-1529
E shahn@esein.co.kr



| 세인 홈페이지 | Newsletter 더보기 | 구독신청 |

세인관세법인의 뉴스레터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인관세법인의 홈페이지 또는 위의 컨설턴트에게 연락하시어 확인 바랍니다.

The newsletter of SEIN Customs & Auditing Corp. is published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general information and does not include any official views or legal opinions. For more details, please check our website or contact the consultants mentioned above.

Copyright 2021 SEIN Customs & Auditing corp. All rights reserved.